

수원지방법원 2022. 1. 13 선고 2020나887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1. 13 선고 2020나88763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0. 9. 29 선고 2020가단540109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승한

피고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학

변론 종결2021. 10. 28.

판결 선고2022. 1. 13.

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. 9. 29. 선고 2020가단540109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0. 25. 체결된 매매계약을 147,057,1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47,057,1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

1)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,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,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).

2) 갑 제1 내지 15호증,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,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)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, 운용, 처분업무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8. 4. 4. L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, 2018. 4. 17.

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차전120395호로 C은 원고에게 133,189,201원 및 그중 132,232,7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, 그 지급명령은 2018. 5. 5. 확정되었다.

나) 피고는 2018. 10. 25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 및 건물'이라 한다)을 매매대금 440,000,000원에 매수(이하 '이 사건 매매'라 한다)한 후 2018. 11. 23.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)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M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, 채권최고액 384,000,000원인 주식회사 N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00,000,000원인 O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

라) 주식회사 N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, 2017. 12. 21. 수원지방법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. 위 임의경매절차의 감정평가인은 2018. 1. 7.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합계 601,855,720원으로 감정하였다.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8. 6. 25. 배당요구를 하였고, 피고는 권리신고금액을 82,800,000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.

마)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서울 양천구 Q아파트 R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었는데, 이 사건 아파트에는 S의 신청으로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T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, 청구금액 12,000,000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등기, U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, 채권최고액 66,000,000원인 주식회사 V(합병 후 주식회사 W)의 근저당권설정등기, 채권최고액 36,000,000원인 주식회사 W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36,000,000원인 O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

바) 위 강제경매절차의 감정평가인은 2018. 4. 6.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157,000,000원으로 감정하였다.

사) 원고는 2019. 1. 22.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. 10. 25.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0,01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,01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(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3470 사해행위취소 사건, 이하 '선행 사건'이라 한다)를 제기하였다. 원고는 선행 사건의 소장에서 C의 적극재산으로 2018. 1. 18. 기준 감정가액 601,356,720원(601,855,720원의 오기로 보인다)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2018. 4. 9. 기준 감정가액 157,000,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가 있고,

소극재산으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(피담보채무 296,923,049원), 주식회사 V(채권최고액 66,000,000원), 주식회사 W(채권최고액 36,000,000원) 및 O(채권최고액 36,000,000원), 가등기권자 M 및 U, 강제경매신청자 S(청구금액 20,000,000원), 원고(채무액 150,890,422원), 피고(채무액 82,800,000원) 등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C이 2018. 10. 25.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C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대물변제 또는 염가매각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.

아) 원고는 위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0,01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하고 향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기재하였으나, 실제로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였다.

자) 수원지방법원은 2020. 5. 26.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는데,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(이하 '선행 제1심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고,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선행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다.

3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선행 사건의 소 제기 무렵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었다는 것과 소극재산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. 원고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, 운용, 처분업무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, 원고가 위와 같이 C의 재산상태, 특히 C이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 및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된 부동산의 가액과 일부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선행 사건의 소 제기 이전에 이미 C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회하고 경매사건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하였으며, 그 결과를 통하여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그 실제 가액보다 낮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.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선행 사건의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

인식하였으며, 그러한 사해행위를 한 C의 사해의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원고가 선행 사건의 소 제기 당시에는 C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선행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입증행위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, 원고 스스로 선행 사건의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 이상 적어도 그 소 제기 무렵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. 결국, 원고가 C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선행 사건의 소 제기일인 2019. 1. 22. 무렵부터 1년이 경과한 2020. 7. 3.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나. 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었는데도 별도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2) 원고가 선행 사건의 제1심에서 명시적으로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뜻을 표시하였고,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 채 2020. 5. 26. 전부 승소하는 선행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,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였으나, 그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, 원고가 2020. 7. 3.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그러나 한편,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이상 전부 승소한 선행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는 없으며, 피고의 항소에 편승해서 청구취지 확장을 위하여 부대항소를 할 수 있을 뿐인데,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(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 참조),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였거나 부대항소의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하더라도,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면 원고의 부대항소는 효력을 잃게 되어 선행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(민법 제406조 제2항, 제1항 참조),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는 시점이 위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라면, 원고로서는 선행 사건에서 유보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, 원고는 위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. 비록 원고가 선행 사건이 해당 항소심

계속중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, 원고가 그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,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,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준규

판사이승일

판사문유진

별지